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104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변론 종결 2018. 6. 8.

판결 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1. 4. 20. 접수 제9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1. 4. 20. 접수 제8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1. 4. 13. 피고에게 '차용금액: 3,000만 원, 차용일: 2011. 4. 13. 변제일: 2011. 7. 12. 이자: 월 2%'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며 '차용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4571호)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9. 23.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는 C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에 '부친인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교부받은 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원고가 2011. 4. 1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차용증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고 근저당설정 원인증서로 작성된 약속어음과 동일채권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의 설정 등 사실상 처분권한은 C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에게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증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에 관한 작성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종근

별지